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797
----------	-------

발의연월일 : 2025. 12. 31.

발 의 자 : 한민수 · 박상혁 · 허영
송옥주 · 김기표 · 장경태
이연희 · 임오경 · 조정식
김남희 · 최혁진 · 이정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는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국내 성인 4명 중 3명에 달하는 3,370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쿠팡의 최근 3년간 매출과 IT 투자가 급증한 것에 비해 정보보호 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보안 투자가 취약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SKT, KT, 롯데카드, 쿠팡에 이르기까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해킹 등 사이버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정부가 국가비상사태급 위기로 규정하고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에 나선만큼 시행령에 규정된 정보보호 현황 공시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공

시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 2항 등).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사업 분야, 매출액 및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시하는”을 “공시하거나 공시가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 중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종류와 설치 영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

족하는 자

가.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일 것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
항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5. 「의료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
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③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서명날
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
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제1호를 삭
제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제13조제4항에”를 “제13조제5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
에”로 한다.

①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정보보호 공시) ① (생략)	제13조(정보보호 공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안전한 인터넷이용을 위하여 정보보호 공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자로서 <u>사업 분야, 매출액 및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u>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u>공시하는</u> 자는 제외한다.	② ----- ----- -----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 ----- ----- ----- <u>공시하거나 공시가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 -----.
<신 설>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기간통신사업자 중 <u>전기통신회선설비의 종류와 설치 영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u> 해당하는 자
<신 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중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일 것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5. 「의료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신 설>

③·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른 공시 내용에 대한 검증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과태료) <신 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제2조제4호에 따른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제공자

③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이사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⑥ 제5항-----

-----.

제41조(과태료) ①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삭 제>

1의2. <u>제13조제4항에</u> 따른 공시 내용의 검증을 거부 또는 방 해하거나 수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 4. (생략) ② <u>제1항에</u> 따른 과태료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 과·징수한다.	1의2. <u>제13조제5항에</u>----- ----- ----- ----- 2. ~ 4. (현행과 같음) ③ <u>제1항 및 제2항에</u>----- ----- ----- -----.
---	---